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출국납부금 부과금액 법률 명시 및 상향 조정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5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출국납부금 부과금액 법률 명시 및 상향 조정	2
※ 참고자료	7
1.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상위 10개국 출국세 현황	7
2. OECD 국가 출국세 현황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5. 12. 5.

다. 회 부 일: 2025. 12.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6. 4. 대통령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공항)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되고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출국납부금 부과금액 법률 명시 및 상향 조정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법률에 명시하고, ② 공항 이용자의 출국납부금을 7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임(안 제2조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② (생략)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③ ----- ----- <u>사람은 다</u> <u>음 각 호에서</u> ----- -----.
<신설>	1. <u>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할 때: 2만원</u>
<신설>	2. <u>국내 항만을 통하여 출국할 때: 1천원</u>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2조¹⁾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여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의 상한을 1만원으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1조의2²⁾는 공항 이용자의 출국납부금은 ‘7천원’, 선박 이용자의 출국납부금은 ‘1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에서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그런데 현행법이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출국납부금(공항)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년 6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조정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 있음³⁾.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수입총계(A)	3,931	1,370	1,643	5,168	6,028	5,615
○법정부담금	3,627	992	1,533	4,994	5,784	5,540
- 출국납부금(B)	930	134	667	2,888	3,358	2,643
(비중 B/A)	23.7%	9.8%	40.6%	55.9%	55.7%	47.1%
- 카지노납부금	2,697	858	866	2,106	2,426	2,897
○정부내부 수입	304	378	110	174	244	75
- 보세특허수수료	304	378	110	174	244	75

주: 용자 회수, 공자기금 차입 등은 제외한 수치이며, '20년~'23년은 코로나 19 기간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은 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법률로 상향하고, ② 공항 이용자의 출국납부금을 현행 '7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부담금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채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3)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출국납부금을 현행 수준(7,000원)으로 유지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지는 2026년 △663억, 2030년 △1조, 1,396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상위 10개국 평균 출국세는 29,000원이고⁴⁾, OECD 회원국(38개국) 평균 출국세는 33,400원(출국세를 운영하는 24개국 평균 출국세는 52,900원)⁵⁾으로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에 비해 높다는 점과 일본의 국제관광여행세가 2026년 7월부터 1천엔에서 3천엔으로 인상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출국납부금의 국제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출국납부금 인상 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은 연간 약 5,800억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⁶⁾되는바,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여부는 향후 경제상황·정책여건 등에 따라 부과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시 외국

4)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상위 10개국 출국세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5) OECD 국가 출국세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6) [출국납부금 징수예상 금액]

구분	징수대상자(명)	징수금액(천원)	비고
당초계획('26년)	44,649,000	312,543,000	- 징수대상자는 '26년 계획인원 - 징수금액은 계획인원×2만원
개정안 적용시('26년)	44,649,000	893,180,000	
증감액	-	580,640,000	

국가에 지불하는 출국세, 다양한 형태로 신설 또는 인상 추세인 해외의 관광세, 출국납부금 제도 도입 이후 물가상승율, 관광 분야 주요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나,

① 출국납부금의 적정수준은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② 시행일 이후 항공권을 예매(발권)한 경우부터 인상액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에 위임된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출국납부금의 적정 부과 수준은 국민 부담,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여력 및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1.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상위 10개국 출국세 현황

국가		국민의 해외 납부금(A)			방한 시 국내 납부금(B)		수지 (B-A) (억원)
		출국세	인원 (만명)	총액 (억원)	인원 (만명)	총액 (억원)	
일본	현행	1,000엔 (9,400원)	882	829	322	226	▲ 603
	인상시	3,000엔 (28,200원)		2,487			▲ 2,261
베트남 (공항별 차등)		14\$ (19,000원)	457	868	51	36	▲ 832
태국		730바트 (28,600원)	187	535	32	23	▲ 512
미국		23\$ (32,000원)	170	544	132	92	▲ 452
필리핀 (좌석별 차등, 일반석 기준)		1,620페소 (40,000원)	157	628	52	36	▲ 592
대만		500NTD (21,000원)	88	185	147	103	▲ 82
싱가포르		65.2SGD (67,000원)	59	399	38	26	▲ 373
스페인		-	39	-	5	3	3
홍콩		120HKD (20,000원)	85	171	57	40	▲ 131
말레이시아 (도착지별 차등, 아세안 기준)		8MYR (6,000원)	43	26	30	21	▲ 5
합 계 (평균)		29,000원 (평균)	2,167	4,185	866	606	▲ 3,57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OECD 국가 출국세 현황

국가	현지화	원화(원)	비고
그리스	20유로	32,900	
네덜란드	29유로	47,700	
노르웨이	342크로네	48,300	유럽외 도착기준
뉴질랜드	100뉴질랜드달러	83,000	입국세(비자연동)
대한민국	7천 원	7,000	
덴마크	250크로네	55,100	중거리 기준
독일	41유로	67,500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12유로	19,700	한국도착 기준
이탈리아	7.5유로	12,300	로마공항 기준(공항별 상이)
체코			
캐나다			항공여객 보안 요금 별도 징수
콜롬비아	122,000페소	178,000	60일 미만 체류자 면제
포르투갈			항공탑승객 탄소세 부가
프랑스	23유로	37,800	
헝가리			
멕시코	68달러	95,500	입국세(비자연동)
미국	23달러	32,300	
벨기에	5유로	8,200	한국도착 기준
스웨덴			25.7월 폐지
스위스			관광지 내 입장료, 소비세 징수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유로	32,900	
아이슬란드	28유로	46,100	
아일랜드	20유로	32,900	
영국	92파운드	174,000	일반석, C밴드(한국)
이스라엘	180세겔	76,200	
일본	1,000엔	9,000	
칠레	25달러	35,000	
코스타리카	29달러	40,700	
튀르키예	1,000리라	33,700	내국인만 징수
폴란드			
핀란드			
호주	70호주달러	64,900	
평균		33,400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